

# 광주전남기자협회 규약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광주전남기자협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전남에 두되 회장 당선자의 편의에 따른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인의 자질향상, 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등에 힘쓴다.

##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 성) 본회의 회원은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은 광주·전남지역 일간신문, 통신 및 방송사 소속 현직 기자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회원으로서 현직을 떠난 자는 현직을 떠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인 및 저명인사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강령 및 목적구현을 위해 힘써야 하며 각급 기관의 결의 사항을 지킬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며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권리 및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소속회원사의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발효, 개시될 경우와 법인이 자진 폐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회원사와 회원은 자동 탈퇴된다. 단, 법인이나 회원이 인수 합병된 회사에 고용이 승계될 때와 1년 이내에 제호와 지령을 승계해 복간하거나 방송을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회원사와 회원의 가입)** 회원사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하고 회원사가 가입하면 그 회원사 기자는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1. 신문·방송·통신은 창간, 개국, 서비스 개시 이후 각각 3년이 경과해야 한다.
2. 신문은 광주·전남지역에 배포망을 갖춘 종합일간지일 것
3. 방송은 광주·전남지역을 가시·청취권으로 가진 공중파 방송일 것
4. 통신은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일 것
5. 가입 신청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회원의 초임이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 이전 1년 동안 체임 사례가 없어야 한다.
6. 신규 회원 가입비는 1년분 회비로 한다.
7. 가입승인은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회사가 신청하고,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광주전남기자협회 가입승인이 확정된 회원사는 신속히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위원회 예규에 따라 가입절차를 진행하여 한국기협 운영위원회의 최종 가입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얻는다.
9. 가입 신청 후 운영위에서 부결될 경우 1년 이내에는 재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10. 각종 공직자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중앙정부·지방정부·의회 등에서 선출 공직자를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해당 직에서 퇴임한 후 1년간 재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제 9 조 (가입신청 서류)** 협회 가입 신청사는 협회 규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협회 규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한국기협 자격징계위원회 예규에 정한 구비서류

### 제 3 장 기 관

**제 10 조 (기 구)**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도 특별위원이 될 수 있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사 지회장, 임금

요건심의위원장, 편집위원장, 공정보도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재난·복지위원장, 혁신위원장, 2030위원장 등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에 총원한다. 운영위는 필요에 따라 정책실장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운영위원회 권능)**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을 담당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의 제·개정 및 중요사항
2. 회원사의 가입 승인 여부
3. 지회, 회원의 규율 유지 및 징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5. 회장선거가 없는 해의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

**제 13 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3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한다.

**제 14 조 (조사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맡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둔다.

**제 15 조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2. 조사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조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4. 회장은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사를 최대 2인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금요건심의위원회)** 본회는 제 8조 5항 등에서 규정하는 임금요건을 심의하고 적용하기 위한 임금요건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17 조 (임금요건심의위원회 구성)** 임금요건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금요건심의위원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운영위원 3명, 고문

단 1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2. 임금요건심의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임금요건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18 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 사항의 정족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 19 조 (업무기구)** 본회에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제 4 장 임 원

**제 20 조 (임 원)** 본회에 회장 및 4인 이내의 부회장과 1인의 감사를 둔다.

**제 21 조 (회장선출)** 회장 선출은 한국기자협회 선거 규정에 준한다. 또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전체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제 22 조 (부회장 선임)** 회장은 각 지회별 안배 원칙을 고려하여 4명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3 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광주전남기자협회를 대표하며 소속 협회, 운영위원회를 지휘·감독하고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회장은 사무국장과 편집장 각 1인씩을 임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고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회장단은 임기 중 소속사로부터 부당하게 퇴직당했을 경우에도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5 조 (감 사)** 감사는 전임 사무국장으로 하며 본회의 운영, 재정 및 경리 상황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의 정기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 26 조 (고 문)** 전임 회장을 비롯해, 협회 현 회원이나 전 회원 등 5명 이내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본회 운영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단 고문 위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장과 사무국장은 월정액의 판공비를 사용하며 임원의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 협회 내에는 상근직 직원 1명을 고용한다. 직위와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 29 조 (인계인수 성실의 의무) 임원은 업무의 성실한 인계인수 의무를 지닌다. 임원은 사무 일반과 회계, 광고, 사업,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 제 5 장 지회 조직

제 30 조 (각 지회 구성) 각 지회에서는 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1.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 지회장이 총무를 임명한다.
2. 지회장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하되 각사 사정에 따를 수 있다.

제 31 조 (지회장의 의무 및 권한)

1. 본회 업무 및 결정 사항의 이행
2. 각 지회 활동의 보고
3. 지회 목적 달성에 부응하는 자치활동
4. 기타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6 장 재 정

제 32 조 (본회의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예산 및 결산 심의) 집행부 예산 및 결산 심의는 감사가 심의를 통해 매년 상반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한다.

## 제 7 장 징 계

제 35 조 (징계사유)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과 회원사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기자 신분을 이용해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본회의 명예와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한국기자협회의 각종 강령, 규약 및 본회의 각종 규약 및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3. 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 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기자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기존 회원사의 경우 '제8조 회원사와 회원가입 규정 5항'의 임금 요건과 관련, 각 지회는 매년 4월 각 지회의 최소년차 회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임금요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다.
6. 심의 결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원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6개월간의 자격정지를 결의할 수 있다.
7. 자격정지 기간을 포함해 1년 동안 규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 재적위원 2/3 참석, 참석위원 2/3이 찬성하면 협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제 36 조 (징계절차)** 본 회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는 본 회 회원 및 회원사에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징계개시요구권자가 운영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2. 징계개시요구권자는 회장단, 운영위원회, 각 지회장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개월 이내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면, 회장이 직권으로 운영위원 중 3명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자료 등을 조사하고, 징계여부와 징계 수위를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조사위원 위촉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위 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6. 조사위원장은 조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징계 대상의 권리)** 징계를 받을 대상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1회의 재심을 신청할 권리

**제 38 조 (징계절차의 의결)** 본회의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 조 (재심)** 운영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 대상자나 징계 개시요구권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심 신청은 징계 의결이 이뤄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징계 대상인 회원사 소속 운영위원은 재심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4. 운영위원회는 재심 청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재심과 관련한 결정은 운영위원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0 조 (징계구분)**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한다.
2. 자격정지 : 기존 회원사라도 신규 회원사 승인 조건에 미달되는 회원(사)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사)의 권리를 박탈한다. 자격정지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제명 : 회원 및 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4. 본 협회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한국기자협회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8 장 복 지

**제 41 조 (회원 부조)** 본회의 회원 경· 조사시의 부조금을 지급하며 지급범위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경 사  
본인·자녀 결혼: 10만원, 화환
2. 애 사  
가. 본인·배우자·자녀 사망: 20만원, 화환  
나.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화환  
다. 본인 조부모 사망: 화환

제 42 조 (올해의 기자상 운영) 매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기자상을 선정, 시상한다. 운영방식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 제 9 장 부 칙

제 43 조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44 조 본 규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45 조 개정된 규약은 2026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